

	<h2 style="margin: 0;">AID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규정</h2>	규정번호	3-3-59
		제정일자	2026.03.01.
		개정일자	-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AI·Digital(AID) 기반 교육혁신과 디지털 전환(DX)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, 교수학습 지원 및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교무학생처 산하에 설치된 AID 교수학습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이에 따른 센터의 운영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AID 기반 교수학습 지원을 통한 대학 교육 품질 향상 및 교육혁신 체계 구축
2. AID 기반 학습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학생 학습역량 강화
3. AI 활용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역량 개발 지원
4. AID 기반 원격교육 및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·운영
5. AI·DX 경진대회 등 교육성과 확산 프로그램 운영
6. 기타 센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교수학습 지원 관련 업무

제2조(명칭) 센터의 명칭은 “AID 교수학습지원센터”라 한다.

제3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① AID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개발
 1. 수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
 2. 교수법 컨설팅 및 수업설계 지원
 3. 교수학습 방법 개발 및 수업 적용 지원
 4. 교직원의 AI 활용 역량 강화 및 AI 관련 자격 교육 운영
 5. 교수학습 모델 개발 및 운영
- ② AID 기반 학생 학습 역량 지원
 1. 학습분석(Learning Analytics)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
 2. 학생 학습 역량 향상을 위한 Learning Mate, Learning Boost 등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
 3. 학습부진 예방 및 학습지원을 위한 Learning Care 프로그램(학습 상담 및 학습코칭) 운영
 4. 학생 학습역량 진단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기획·개발
- ③ AID 교육환경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
 1. AI 교육도구 및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·운영
 2. AI 교육도구 공동 활용을 위한 단체 라이선스 계약 및 운영 지원
 3. AI·DX 경진대회 및 교수학습 관련 공모전 운영
- ④ 원격교육 및 디지털 학습환경 운영
 1. 원격수업 운영 및 모니터링 등 품질 관리
 2. LMS(학습관리시스템) 등 디지털 학습 플랫폼 운영 및 지원
 3.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지원
 4. 이러닝 스튜디오 운영 및 강의 콘텐츠 촬영·편집 지원

제 2 장 조 직 및 위 원 회

제4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 센터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, 전담 직원 및 조교 등을 둘 수 있다.

제5조(위원회 설치) ① 센터 운영의 주요 사항 심의 및 성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.

1. AID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위원회 (이하 “운영위원회”)

2. AID 교수학습지원센터자체평가위원회 (이하 “자체평가위원회”)

② 원격수업의 교육과정 심의 및 콘텐츠 질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원격교육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, 관련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.

제 3 장 위 원 회 별 기 능

제6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센터 운영 기본 계획 및 AID·원격교육 발전 계획 수립
2. 원격수업 관련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
3. AID 교수학습 사업의 예산 편성 및 결산
4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

제7조(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)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센터 핵심성과지표(KPI) 및 원격수업 만족도 평가지표 설정
2. 연간 교수·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
3. 원격교육 콘텐츠의 질적 수준 및 운영 적정성 평가
4.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선안(환류) 도출 및 차년도 계획 반영

제 4 장 원 격 수 업 운 영 및 지 원

제8조(콘텐츠 제작 및 지원) 센터는 원격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강의 촬영 스튜디오 운영, 영상 편집 지원, 저작권 자문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.

제9조(인프라 관리) 센터는 안정적인 원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습관리시스템(LMS), 화상강의 솔루션 등의 시스템을 상시 점검하고 유지·관리한다.

제10조(질 관리 및 점검) 센터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격수업 콘텐츠의 재사용 주기, 수업 차시별 분량, 출결 관리 시스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정·반영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재 정 및 보 칙

제11조(재정) 센터의 운영비는 교비 예산, 정부 재정지원 사업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